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5일, 이해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11.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의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

하여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에 인공지능 및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인공지능·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책임관 협의회 설치·운영 등 인공지능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이행,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영향평가 및 위험관리로 신뢰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안 제1조), 정의 규정(안 제2조),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등 기존 25개 조문 중 17개 조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본칙에 제5장 7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국가적 인공지능 전환 전략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행정기반 구축 및 책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법률 제명을 개정하는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개정안 부칙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개정안은 책임관 협의회의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협의회 구성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등 입법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제·안보·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산인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를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개정안은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자격 및 기준, 인가의 공개·공시 절차와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협회의 주요 자격과 기준, 인가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 등 보완이 필요함.

여섯째,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위임의 범위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등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으로 예시함으로써 수범기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곱째,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받아 그 결과 평가목적 및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